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성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893 발의연월일: 2024. 10. 24.

발 의 자 : 김성회 · 정준호 · 윤준병

김남근 • 박선원 • 조승래

정일영 · 진선미 · 권향엽

이인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고 있음.

그런데 거래가격이 아무리 높은 주택이라도 중과 면적 기준과 건축물 가액 기준에 하나라도 미달되면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, 취득세 중과 대상 고급주택이 전체 주택 중 극히 일부에 해당되거나 고가주택의 취득세율이 저가주택의 취득세율보다 오히려 낮은 경우가 발생하는 등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의실효성 및 조세형평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.

이에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에 대한 분류 기준 중 면적 기준을 제외함으로써, 초고가 주택이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조세

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고자 함(안 제13조제5항제3호).

법률 제 호
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5항제3호 본문 중 "면적과 가액"을 "가액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	제13조(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
중과) ① ~ ④ (생 략)	중과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5
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	
경우(고급주택 등을 구분하여	
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	
함한다)의 취득세는 제11조 및	
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	
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	
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	
액으로 한다. 이 경우 골프장은	l
그 시설을 갖추어 「체육시설	
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」	
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(시	
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	
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	
서 같다)을 하는 경우뿐만 아	
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	
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	
는 경우에도 적용하며, 고급주	
택・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	
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	
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	

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 토지로 본다.

- 1. 2. (생략)
- 3. 고급주택: 주거용 건축물 또 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 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 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 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 과 그 부속토지. 다만,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[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 터,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 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각각 6개월(납세자가 외 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 각 9개월)]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 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4. · 5. (생략)

⑥ ~ ⑧ (생 략)

3 <u>가</u> 액
4. • 5. (현행과 같음)
⑥ ~ ⑧ (현행과 같음)